

2020 세법노트북(7판 1쇄, 2쇄, 합본) 추록 및 수정표 5.21.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규정이 신설되고 개정되었습니다. 최근 개정은 2번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2020.3.23.(1차 개정)과 2020.5.19.(2차 개정)에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중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한도액 계산식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2020년도 접대비 한도액의 일시적 상향규정(법인세, 소득세)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식(법인세)
3.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특례(2020년 전반기)(법인세, 소득세)
4.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부가가치세)
5.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특례(부가가치세)
6.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인상(소득세)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0.5.21. 주민규 드림

2020 세법노트북 법인세법(7판 1쇄, 2쇄, 합본)

쪽	행	종 전	수 정
48	위12	*5) 적용률 표 아래 추가	(주1)
49	위7	사례9 의 내용 중 적용률 및 한도액	(주2)
76	아래18	① 개별자산별로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인 경우 개정 (종전 : 300만원)	① 개별자산별로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19.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 지출분 : 300만원)

(주1)

개정 2020.1.1.부터 2020.12.31.까지 지출한 접대비의 일반수입금액 적용률(조특법 136 ④)

① 일반매출액 :

100억원 이하분 0.35%,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분 0.25%, 500억원 초과분 0.06%

② 2020년이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

$$\text{①에 따른 수입금액별 한도} \times \frac{\text{해당 사업연도 중 2020년에 속하는 일수}}{\text{해당 사업연도의 일수}} + \text{법인세법에 따른 수입금액별 한도} \times \frac{\text{해당 사업연도 중 2020년에 속하지 않는 일수}}{\text{해당 사업연도의 일수}}$$

(주2)

(종전) 0.03%, 0.2%, 0.3% || 2,300,000 60,000,000 30,000,000 92,300,000

(수정) 0.06%, 0.25%, 0.35% || 3,100,000 75,000,000 35,000,000 113,100,000

2020 세법노트북 소득세법(7판 1쇄, 2쇄, 합본)

쪽	행	종 전	수 정
46	아래9	표 중 법인의 기부금한도	(주1)
70	위4	② 국군포로가 받은 점착금과 그 밖의 금품	② 국군포로가 받은 <u>위로지원금</u> 과 그 밖의 금품
98	아래17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주1) 공제율 개정
110	위20	① 진찰·진료·질병예방을 ~	① 진찰·치료·질병예방을 ~
177	아래10	(라)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 ^{주3)} 가 종이계산서 발급	(라)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 ^{주4)} 가 종이계산서 발급

(주1) 종전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주세요.

기부금 한도	법 인	개 인
법정기부금	종전과 동일	종전과 동일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text{기준소득금액} - \text{이월결손금}) \times 30\%$ 개정	종전과 동일
지정기부금	$(\text{기준소득금액} - \text{이월결손금} - \text{법정기부금}) \times 10\%$ (사회적기업의 경우 20%) 개정	종전과 동일

(주2) **특례기간(3월 ~ 7월)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상향조정(소득법 126조의2)**

구 분	2020년도 소득공제율			
	1월, 2월	3월	4월 ~ 7월	8월~12월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80%	80%	40%
도서, 공연 등	30%	60%		30%
직불카드등	30%	60%		30%
신용카드	15%	30%		15%

— 이상 —

※ [이하의 개정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특례(조특법 8조의4) : 법인세, 소득세 **신설**

구 분	내 용
(1) 환급대상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202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하 “환급대상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신청할 수 있다.
(2) 적용요건	해당 내국인이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202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3) 환급세액	<p>환급세액 = ① - ② (한도 :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과세연도의 법인세액)</p> <p>①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1) $\times \frac{6}{\text{직전 과세연도의 개월 수}^{*2}}$</p> <p>② [직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환급대상기간의 결손금 상당액 $\times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6}$) \times 직전 과세연도의 세율] $\times \frac{6}{\text{직전 과세연도의 개월 수}}$</p> <p>*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제외 *2) 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함(이하 같음)</p>
(4) 환급세액 추정	<p>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① 및 ②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징수한다.</p> <p>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한 후 환급 신청을 한 내국인의 신청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발견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p> <p>② 202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p> <p>③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인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p> <p>* 이자상당액 : 추정 환급세액 \times 추정 고지일까지 일수 \times 0.025%</p>
(5) 환급세액 정산	<p>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을 지급받은 내국인에 대하여 다음 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정산하여 추가로 환급(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하거나 징수한다.</p> <p>① 202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내국인의 경우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된 환급세액과 (3)에 따른 환급세액과의 차액</p> <p>② 202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은 내국인의 경우 : (3)에 따른 환급세액</p>
(6) 신청기한 및 환급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인은 환급대상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2.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조특법 108조의4) : 부가가치세 **신설**

구 분	내 용										
감면대상	<p>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12. 31.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p> <p>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일 것</p> <p>② 감면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4천만원 이하일 것. 다만, 해당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p> <p>③ 감면배제사업(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p> <p>※ 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한다.</p>										
감면세액	<p>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감면한다.</p> <p>감면세액 = 일반과세방식 세액(A) - 간이과세방식 세액(B)</p> <p>A :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 - 공제감면세액*1)</p> <p>B : 해당 과세기간의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부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의 합계액(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용역의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2) × 10%</p> <p>※1) 공제감면세액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일반택시운송업자 경감세액, 현금영수증사업자 공제세액</p> <p>※2) 업종별 부가가치율</p> <table border="1" data-bbox="392 1051 1186 1263"> <thead> <tr> <th>구 분</th> <th>부가가치율</th> </tr> </thead> <tbody> <tr> <td>①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td> <td>5%</td> </tr> <tr> <td>② 소매업, 도매업, 음식점업</td> <td>10%</td> </tr> <tr> <td>③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td> <td>20%</td> </tr> <tr> <td>④ 건설업, 그 밖의 서비스업, 기타업종</td> <td>30%</td> </tr> </tbody> </table>	구 분	부가가치율	①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	② 소매업, 도매업, 음식점업	10%	③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④ 건설업, 그 밖의 서비스업, 기타업종	30%
구 분	부가가치율										
①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										
② 소매업, 도매업, 음식점업	10%										
③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④ 건설업, 그 밖의 서비스업, 기타업종	30%										
감면신청	<p>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p>										

3.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특례(조특법 108조의5) : 부가가치세 신설

구 분	내 용
면제대상	<p>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12.31.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재고 납부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일 것</p> <p>②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0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일 것</p> <p>③ 감면배제사업(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p>
감면배제사업 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	<p>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납부의무 면세세액은 다음과 같다.</p> <div style="background-color: #e0f0ff; padding: 5px; margin: 5px 0;"> $\text{납부의무 면세세액} = (\text{납부세액} - \text{공제세액}^*) \times \frac{\text{감면배제 사업 이외 사업에 대한 납부세액}}{\text{납부세액의 합계액}}$ </div> <p>* 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p>
준용규정	<p>납부의무 면제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의무 면제의 규정(미등록가산세과 자진납부시 처리)을 준용한다.</p>

— 끝 —